

# 조선시대 男子의 首飾 연구(Ⅱ) - 風簪과 貫子를 中心으로 -

장 숙 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특임교수

## A Study on Korean Man's Head Ornament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Pungjam* and *Kwanja* -

**Sook-Whan Chang**

Special Appointme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9. 12. 1. 접수; 2010. 2. 8. 수정; 2010. 2. 19. 채택)

###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manggon” that holds down man’s top knot hair and its accessories “pungjam”, “kwanja”. manggon was seen first time in the mural of Donwhang kae won chon bo during T’ang period (713-756). The “Tu Aek Ra” manggon shown in this mural would be the origin and beginning of manggon’s usage. Also the “Sha” that was placed on top of the hair for decoration purpose is believed to be a former form of “manggon”

Before the short hair cut was enforced, wearing the “kwan”(head gear)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etiquette. Thus the head gear was treasured and the manggon which was the most essential piece to cover down the hair before to put on the head gear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iece.

However, since the manggon was tied very tightly around the forehead, manggon caused some sickness.

From my private collections of man’s head gears and ornament, 121 items were selected and used for analysis and the followings were found:

1. Pungjam was divided into 8 categories according to its shape and a research was made on its unique structural characteristic on each categories.
2. Kwanja’s material and design that were used are all in accordance to the historical recordings.

**Key Words:** Manggon(망건, 網巾), Pungjam(풍잠, 風簪), Kwanja(관자, 貫子), Sha(사·쇠, 纒·紵), Tu Aek Ra Manggon(투액라망건, 透額羅網巾)

## I. 서론

우리나라의 기혼남자의 계양(髻樣)은 크게 쌍계(雙髻: 쌍상투)와 수계(豎髻: 외상투)로 나뉜다. 쌍계는 보통 관례(冠禮) 전의 남아(男兒)나 장년(壯年), 노년이라도 정발(頂髮)이 많은 사람이 했으며 수계는 조선조 성인남자의 가장 일반적인 수발(修髮) 형태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망건을 갖 아래에 착용할 때에는 동곳, 풍잠, 관자 등 여러 수식구를 장식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멋을 부리고 있어서 조선조 선비들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남자의 가장 기본적인 염발도구(斂髮道具)인 網巾과 망건의 수식물인 風簪과 貫子에 대하여 사적고찰 및 현전 유물을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선행연구(先行研究)에서는 유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연구 성과가 따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문헌고찰과 함께 현전 유물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를 우위(優位)에 두었다. 먼저 網巾은 10점을 분석유물(分析遺物)로 삼고 表로 만들었다. 風簪은 표본유물(標本遺物)로 46점을 분석유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 32점을 表로 만들어 보았고, 貫子는 표본유물로 85점을 분석유물로 삼고, 그중에 46점을 表로 만들어 형태와 재료, 크기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에서는 『한등록』, 『한양가(漢陽歌)』, 『이춘풍전(李春風傳)』 등 국문학 작품, 『성호사설(星湖僊說)』,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 고문헌(古文獻)과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網巾의 기원(起源)과 사용례를 찾아보고,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風簪의 종류를 분류하여 형태에 따른 쓰임새도 간단히 살펴본 후, 貫子가 생겨난 계기가 무엇인지 관자의 재료와 문양도 아울러 구명해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網巾, 風簪, 貫子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현전 유물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男子 首飾의 체계(體系)를 정리하고자 함이며, 이러한 자료가 전통복식연구의 지침(指針)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II. 朝鮮朝 網巾制

斷髮을 하기 이전에는 冠을 쓰는 것이 곧 禮라는 등식에 따라 冠을 다른 어느 것 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冠을 쓰기에 앞서 머리카락을 여며 매는 데 필수적인 網巾은 당연히 衣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網巾의 장식물인 風簪과 貫子를 고찰하기 전에 網巾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網巾의 起源과 制

網巾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걷어 올리기 위하여 이마에 둘러매던 머리띠이며 巾(巾)의 일종이다.

망건의 기원을 최남선(崔南善)은 중국 당나라에 두고 있다. 당나라 돈황 벽화<악정귀부인행향도(樂廷瓊夫人行香圖)>를 보면, 주요인물이 귀족 명부(貴族命婦)의 성장(盛裝)을 하고 있으며 3인은 투액라망건(透額羅網巾)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고, 개원천보(開元天寶: 713~756)간에 유모제(帷帽制)가 폐지된 후에 남은 유물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당나라 때는 널리 일반에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앞이마를 가리는 부속물에 불과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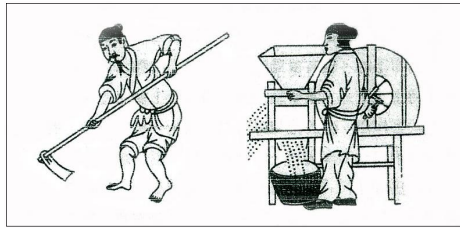
『사례편람(四禮便覽)』 사관례(士冠禮)에 보면 “사(纚)는 머리를 싸고 상투를 싸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길이는 육척[周尺]이다. 겹으로 만든다. 정수리에서 앞이마 위에 마주대어 상투를 감는다. 옛 사람은 남녀가 통용했다. 지금도 남자는 망건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곧 남은 제도이다. 라고 사(纚)의 유제(遺制)가 망건이라고 하고 있다.”<sup>2)</sup>

망건은 조선 초기 명나라에서 창안된 망건이 조선에 전래되어 그 재료를 바꾸고 형태가 변모된 것이다. 중국망건의 재료는 비단(紉)에 짠 옷칠을 해서 만든 반면 조선은 말총을 사용했고, 형태도 중국은 『삼재도회(三才圖會)』 그림과 같이 망(網)의 형태로 제작되지만 이마 뿐 아니라 정수리까지 만들어 망건의 꼭대기 부분으로 상투가 내밀게 된 불편한 구조이다.

1420년(세종 2)에 馬尾網巾을 명나라 사신에게 내린 기록이 있고, 1429년(세종 11)에 국왕이



<그림 1> 『三才圖會』 중국 망건



<그림 2> 『天工開物』 중국 망건

명나라 사신들에게 이 말총망건을 선물하였을 때 그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1452년(문종 2) 기록에는 망건은 머리털을 감싸는 물건인데, 마미(馬尾)로써 그물처럼 맺는다고 하여 망건의 材料와 容途, 製作技法까지 알려주고 있다. 1488년(성종 19)에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도 “조선의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고 했다.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최남선(崔南善)도 명나라의 망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이 상으로 유행하다가 중국으로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조선의 말총망건은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되어 17세기경에는 중국의 망건 양식이 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망건은 ‘당[살춤]’이라고 하는 상부의 줄라매는 곳과, 편자[邊子]라 하는 하부를 줄라매는 곳으로 구성된다. 전면에 그물처럼 엮은 데를 ‘앞’이라 하고 후면에 뒤통수를 싸는 데를 ‘뒤’라고 하며, 망건을 매는 줄을 ‘당줄’이라 한다. 망건을 모두 馬尾로 만들되 ‘앞’만은 인발(人髮) 또는 낙타미(駱駝尾)로 곱게 떠서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선단은 흑색공단으로 하고 상중(喪中)이면 백색포로 한다.

망건을 쓸 때는 ‘당[살춤]’은 무수한 고를 맺어 두른 것이니 고의 구멍에 가는 당줄을 꿰어서 뒤에서 머리를 줄라서 상투에 잡아매고 ‘편자’는 양쪽 끝에 든든한 당줄을 달아서 편자의 귀 뒤에 당(當)하는 곳에 관자를 달고 좌우 쪽 당줄을 맞바꾸어다가 관자로 꿰어 내어서 다시 망건뒤로 가져다가 엮어 맨 다음에 두 끝을 상투 앞으로 가져다가 칭칭 동여맨다.

재료는 말총으로 양쪽 가는 촘촘하게 뜨고 앞이마가 닿는 부분은 약간 성글게 엮고, ‘선단’은

흑색공단, 흑색무명, 흑색생명주로 하고 상주(喪主)는 배[麻布], 무명[白布]으로 하였다. ‘당줄’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다.

중국의 망건은 앞이 높고 뒤가 낮아서 호좌망건(虎座網巾)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것은 앞이 높고 양빈(兩鬢) 위가 조금 낮아 팔자망건(八字網巾)이라 하였고, ‘편자’는 길고 ‘당’의 둘레는 짧아서 위가 오그라지게 생긴 복자망건, 일자망건 등이 있었다. 또한 시신(屍身)에는 흑단(黑緞)으로 망(網)을 대신하였으며 상인(喪人)은 포(布)로써 대신하였고 상중(喪中)에는 망건 양단(兩端)의 선단을 흑(黑)으로 하지 않고 백(白)으로 하였다고 한다. 燕山君 元年 1月條에는 왕이 진향(進香) 때에 상아관자를 붙인 백종망건(白鬃網巾)을 쓴 일도 있었다.

망건은 상하귀천(上下貴賤) 모두 관례(冠禮)로써 상투를 짠 후 쓰게 되는데, 관례를 치른 후 사대부(士大夫)들은 잠잘 때를 빼놓고는 일상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필수(必須) 수공예품(手工藝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왕실은 예외였으니 특히 나이가 어린 세자에 관해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조선에서 세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책봉된 날로부터는 망건을 착용하였고, 그 위에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아청곤룡포(鴉靑袞龍袍)를 입도록 하였다.<sup>4)</sup> 일례로 1538년(中宗 17) 세자의 책봉과 관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에는 대전(大殿)의 탄일절일포리물선의대(誕日節日表裏物膳衣櫛)에 두의류(頭衣類)를 보면, 마미망건(馬尾網巾)의 일년간 수량이 2부이다.

1491년(성종 22) 9월에 “내전(內殿)에서 전에 사용했던 어망건(御網巾)을 내다가 상의원으로 하여금 수선하게 하는데 터진 곳이 많고 어의

(御衣)에 흰 동정도 때가 많으니 왕의 검소함이 대개 이와 같다”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조(工曹) 경공장(京工匠)에 상의원 4명, 공조 2명의 망건장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망건을 진상하는 것은 물론 수선까지 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망건의 수요가 늘면서 생산량도 많아지자 망건의 제작이 분업화되어 제작 장인도 망건장인(網巾匠人)과 관자장인(貫子匠人)(망건을 다듬고 비단 천을 붙이고 관자를 다는 마무리 작업을 함)으로 분리되어 수요를 충당하게 되었다. 말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민간 수공품으로 대량으로 제작되어 왕실의 수요까지 충당할 수 있어서, 상의원(尙衣院)이나 임시로 설치하는 도감(都監)에서도 따로 망건장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관자장만을 차출하여 필요한 수량을 마련하곤 했다. 현존하는 『도감의궤(都監儀軌)』 중에서 망건장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匠人)은 박말남(朴耒男)이었다. 그는 1627년 소헌세자의 국혼 때 도감에 차출되어 세자가 착용할 옥관자를 갖춘 망건 2개를 제작하여 들였다.<sup>5)</sup>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망건을 평상시 쓰고 있는 것은 중국과 우리뿐이다.”<sup>6)</sup> 라고 하고 있다. 망건은 상투를 튼 머리털을 여미어 매는 데는 편리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던 것 같다. 이마에 강하게 조여 매어서 두부(頭部)에 통질(痛疾)을 느끼며 종기가 생겨 참기가 어려운 점 등 頭部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극(極)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한다.<sup>7)</sup>

출토망건은 대부분 수의용으로 공단으로 새로 제작되었는데 서울에서 출토된 이익정(李益旼, 1699-1782) 망건<sup>8)</sup> 은 평상시 사용했던 것으로 견사(絹絲)로 엮어 제작된 것이 특이한데 말총으로 제작된 것 보다 약하고 실용성은 적어도 頭部를 압박하는 것이 적어서 노인들에게는 적합했을 것 같다. 명나라에서 처음 망건이 수입되었을 때는 견사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당시 유행했던 말총으로 재료가 바뀌어 다시 중국으로 말총망건이 역수출 된 것이다.

또한 宣祖의 손자 능창군(綾昌君) 이진(李佺)의 출토망건은 말총망건으로 형태가 보통망건과 전혀 다르며 아름답다. 꽃무늬 옥관자가 부

착된 고급망건으로 평소에 사용했던 것 같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망건을 바르게 착용하는 법으로 “망건이란 머리털을 싸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바싹 죄어 매서 이마에 눌린 흔적이 있게 해서도 안 되고, 늘어지게 매서 흩어진 털이 있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눈썹을 눌러 매지도 말고 눈 꼬리가 위로 치켜들게 매지도 말라”<sup>9)</sup>고 하였다.

망건 때 빼는 방법을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 보면, 계란 노른자를 발랐다가 쇠자(刷子)와 부자(附子)로서 깨끗이 씻은 즉 새것이 되고, 뜨거운 잿물[灰汁]에 끓이면 또한 좋고, 망건에 때가 없으면 안질(眼疾)이 없다고 했다.<sup>10)</sup>

## 2.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網巾

### 1) 王의 하사품인 網巾

網巾에 대한 왕의 下賜品이나 선물의 기사는 조선 초기에 많이 보인다(표 1).

### 2) 網巾의 사치금지

國初에는 망건과 같이 細瑣한 물건에도 紗羅綾緞의 사용을 금했는데, 國末에는 반대로 망건과 같이 자질구레한 물건에는 각종비단과 명주를 쓰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표 2).

### 3) 世子の 冠禮와 網巾

세자는 관례전이라도 망건을 착용할 수 있었다(표 3).

### 4) 王의 網巾 使容例

왕의 망건의 해진 데를 고치고 기웠던 기사로 왕의 검소함을 알 수 있으며, 國喪 때에는 白鬃網巾·白驄網巾에 象牙貫子を 착용했고, 제주도에 유배된 光海君에게 금관자가 부착된 망건을 새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였다. 巾을 쓰지 않고 신하에게 임하는 것을 不敬한일로 금하고 있으며, 병 조리 중에도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망건을 착용했다(표 4).

< 표 1 >

『世宗實錄』 2年(1420) 4월19日 丁巳	使臣에게 도금한 작은 부치 두 개, 낫주발 두벌, 낫젓가락 42벌, 낫순갈 2개, 찻순가락 2개, 말총망건[馬尾網巾] 두 벌을 선사했다.
『世宗실록』 11年(1429) 1月4日 辛亥	金滿이 안장 2개, 흑사피(黑斜皮)·해달피(海獺皮) 화살통 각각 1개, 말총망건[馬尾網巾] 1개, 三刀子 5部를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世宗實錄』 23年(1441) 5月12日 丁未	鄭孝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또 童所老加茂에게 紗帽·胡床·鍍花銀帶·鞍籠·옥환자를 갖춘 망건[玉環子具網巾]과 典吏·早隸·丘史를 내려주었다.
『世宗실록』 23年(1441) 10月3日 丙寅	하직하는 오랑합 도지회동지 낭복아한에게 都萬戶를 제수하고 品帶, 胡床, 鞍籠, 옥환자와 망건[玉環子具網巾]을 갖추어 준다.
『世祖實錄』 1年(1455) 8月7日 庚戌	社稷祭의 飲福宴에서 新曲을 연주하게 하다. 이 잔치에서 威吉道都節制使 楊汀을 위로해 전별하였는데, 黑草笠, 網巾, 貂冠, 耳掩, 段子衣, 大紅絲帶, 白玉鍍條環具紫絲帶, 靴子, 護膝, 弓矢, 刀劍을 하사하였다.
『世祖實錄』 9年(1463) 9月19日 乙亥	序賢亭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內禁衛 李鐵柱가 9發을 쏘아서 모두 맞히니, 各궁 1張을 내려주었다. 또 어제 어떤 사람이 사슴을 쏘다가 잘못하여 金淡의 笠[笠]을 맞히어 그 網巾의 貫子가 끊어져 떨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의 그 소문을 듣고서 김담에게 옥관자가 달린 망건[玉貫子具網巾]을 내려주고서 衛將·部將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불러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世祖實錄』 11年(1465) 10月6日 庚辰	成均館司藝 鄭自英, 直講 丘從直 등에게 『周易』을 논하게 하다. 구종직·정자영 등에게 옥관자를 갖춘 망건[玉貫子具網巾] 각각 하나씩을 주고, 제수하여 堂上으로 삼다.
『世祖實錄』 12年(1466) 5月7日 丁丑	鄭蘭宗은 先進이고 나이가 많으니 이 사람을 제수해야 할 것이다. 즉시 宮內에 간수한 옥환을 갖춘 망건[玉環具網兒] 1事를 내어다가 정난중에게 하사하고 同副承旨로 제수하다.

< 표 2 >

『成宗實錄』 6年(1475) 7月17日 甲子	承政院에서 사치와 참람[僭濫]함을 금하는 규정을 바치다. 그 조령에는 1.紗羅綾緞은 市中에서 賣買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킨다. 비록 娼妓일지라도 御前에서 秀才할 때 이외에는 또한 禁하고, 吏屬과 庶人과 僕隸의 囊子·망건의 장식[網巾之飾]과 자질구레한 물건[細瑣之物]도 역시 금한다.
『高宗實錄』 23年(1886) 2月11日 乙亥	議政府에서, 朝臣이하의 복식에 관하여 節目을 만들다. 1.대체로 예복에 관계되는 것은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각종 비단과 명주를 쓰는 것을 다 같이 금지하지 않는다. 1. 흰 갓끈[白笠纒], 網巾飾, 揮項背子, 吐手, 手巾과 같은 작은 것은 금하지 않는다.

< 표 3 >

『中宗실록』 17年(1522) 7月17日 辛酉	祖宗朝에서 元子는 세자에 봉해진 날부터 비록 冠禮는 하지 않았더라도 網巾·翼善冠·鴉靑袞袍를 입고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을 대하였으니 일찍이 관례를 아니했다고 해서 便服을 입는데 구애받지 않았다.
『光海君日記』 2年(1610) 3月1日 丁丑	禮曹가 세자의 관복착용에 대해서 건의하다. 中宗朝에 이미 忠靜冠을 세자에게 쓰게 했다고 하였으니 上의 하교에 따라 兪正冠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祖宗朝에서는 …편복을 입는데 구애받지 않았다.

&lt;표 4&gt;

『成宗實錄』 22年(1491) 9月5日 戊寅	대내에서 일찍이 임금의 網巾을 내놓고 尙衣院으로 하여금 헤어진 데를 고치고 길게 하였는데, 헤어진 곳이 많이 있었으며, 御衣의 흰 옷깃[白領]도 또한 때가 끼어 더러운 곳이 많았으니. 儉素함이 이와 같았다.
『燕山君日記』 1年(1495) 1月26日 庚戌	安陽君 이행의 進香 때에 承政院에 묻기를, 白鬃網巾을 쓰려는데 象牙를 圈子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無妨하다.
『仁祖實錄』 15年(1637) 4月25日 甲午	상이 下敎하였다. “光海가 착용하는 笠子가 심하게 떨어졌다.고 하니, 笠子 및 網巾과 金貫子를 袞(該曹)로 하여금 잘 만들어 보내게 하라.”
『英祖實錄』 37年(1761) 11月2日 丙申	왕이 校理 李仁培에게 “世孫이 지난번에 병중에 進講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니, 網巾을 벗고 中衣를 입었습니다. 왕이 “巾을 쓰지 않고 신하에게 입하는 것은 몹시 불경(不敬)한 일이니, 보도(補導)하는 절차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뒤로 기운이 불평스러울 때는 講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正祖實錄』 24年(1800) 6月15日 丙寅	藥院의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맞는 약이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다. 병을 조리하는 중이라도 잠자기 전에는 網巾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를 묶어 쓴 채로 접견하고 있지만 함께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였다.

<표 5> 망건의 材料와 크기<sup>11)</sup>

分類 番號	種 類	크기(cm)		備 考
		고의세로(幅)	“앞”의 끝-貫子中心	
1	馬尾網巾	1.5	7.3	玳瑁風簷·玳瑁貫子 1雙
2	”	1.4	선단이 없음	당줄씨가 綿絲 10가닥
3	”	1.5	9.5	前後선단에 黑色을 칠함
4	”	1.5	8.0	
5	”	1.7	6.5	前선단에 黑色칠을 함
6	”	1.5		”
7	”	1.5	7.0	喪祭時容. 白綿絲당줄
8				玳瑁貫子 1點
9	”	1.4	8.3	갈색빨관자 1雙
10	”	1.4	6.8	갈색유리관자 1雙

&lt;표 5&gt; 계속

分類 番號	種 類	材 料	크기(cm)				
			가로 (全長)	세로 (全幅)	선단가로 (長)	선단세로 (幅)	
1	馬尾網巾	馬尾·黑緞	56.4	7.8	13.8(左)	14.5(우)	1.4
2	”	”	57.0	7.9			1.4
3	”	馬尾·白綿布	59.0	8.0	14.7	14.5	1.4
4	”	馬尾·黑緞	60.0	8.7	15.0	15.0	1.7
5	”	馬尾·白綿布	54.2	7.4	14.0	13.2	1.2
6	”	黑白말갈기·白綿布	55.0	8.0	12.2	13.0	1.6
7	”	”	54.4	7.6	12.0	12.6	1.4
8	”	馬尾·黑緞	56.5	8.0	13.5	14.0	1.5
9	”	馬尾·黑綿布	57.0	8.0	14.4	16.4	1.6
10	”	馬尾·黑緞	56.0	7.8	15.4	15.0	1.5

### III. 網巾飾의 風簪과 貫子

망건식(網巾飾)이란 망건에 부착된 장식물인 관자(貫子), 풍잠(風簪)과 설다리와 편단 부분을 감쌀 흑색직물(黑色織物) 등을 말한다. 이 말은 成宗6年(1475) 승정원(承政院)에서 사치(奢侈)와 참람(僭濫)함을 금(禁)하는 규정 가운데 사라능단(紗羅綾緞)은 일체 금하면서 리속(吏屬)과 서인(庶人)과 복예(僕隸)의 낭자(囊子)·망건(網巾)의 장식(網巾之飾)과 자질구레한 물건도 역시 금한다. 는 내용에 보인다.<sup>12)</sup>

조선의 선비들이 망건을 갖 아래에 착용할 때에는 관자와 풍잠, 동곳 등 여러 수식구를 장식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멋을 부리고 있어서 조선조 선비들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sup>13)</sup>

#### 1. 풍잠의 種類 및 特徵

풍잠은 흑립(黑笠)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장식물이다. 앞이마 위에 닿는 망건 부위 ‘당’에 달아서 장식을 하는데,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14)</sup> 『홍부가』의 내용에 놀부가 제비집을 처마에 붙이는 형상을 보고 “망건 ‘당’에 풍잠 달 듯 한다”는 비유는 적절한 묘사이다.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雙劍對舞]나 기산(箕山) 풍속화에서도 풍잠이 달린 망건을 쓰고 있는 선비를 볼 수가 있다. 초상화로는 대영박물관 소장 편복차림의 초상화에서 겹 탕건 속에 비치는 호박으로 만든 풍잠이 보이고(그림 3), 홍선대원군의 초상화에서도 와룡관(臥龍冠) 아

래 탕건 속에 호박풍잠을 볼 수가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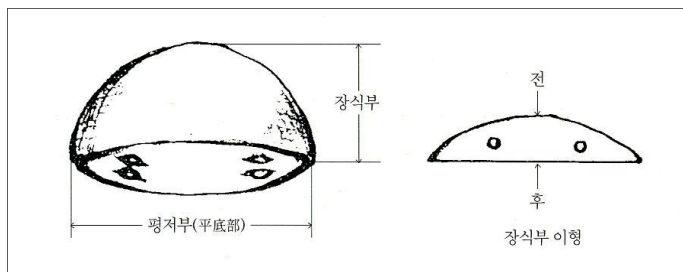
<그림 3> 초상화, 대영박물관 소장



<그림 4> 홍선대원군 초상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풍잠은 동곳과 마찬가지로 재료에 의한 신분 표시의 기능은 없지만 대개 상류층에서는 호박(琥珀)·백옥(白玉)·수정(水晶)·대모(玳瑁) 등을 사용하였고, 서민(庶民)은 우각(牛角)·목칠(木漆)·유리(琉璃)·木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나무 풍잠은 대부분이 오동나무에 옷칠을 한 것으로 이는 가볍고 습도 조절과 통풍이 가능한 오동목(梧桐木)의 특성 때문인 것 같다.

풍잠의 기본형은 遠山形 혹은 반달형으로 상부인 장식부(裝飾部)와 망건에 부착시킬 수 있



<그림 5> 風簪의 構成과 名稱



<그림 6> 遠山形 風簪,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7> 빗[櫛] 風簪,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도록 실을 켈 수 있게 구멍이 뚫린 평면인 평저부(平底部)로 나눌 수 있다.

반달형풍잠[遠山形簪]의 재료로 琥珀·금패류(鎗貝類)에는 겉면에 龍과 鶴을 양각 한 것이 있고, 왕세자[純宗] 임오관례·가례 때 패물받기에는 ‘금패풍잠 세 개’와 ‘호박풍잠 한 개’가 보이며, 『옥중화』의 신연 급창의 호사스런 머리치장으로 ‘호박풍잠’이 나온다. 이밖에 호랑이가 음각된 백옥풍잠과 백수정(白水晶:왕세손용)·흑수정(黑水晶)·유리(琉璃)도 있다. 나무에는 주칠(朱漆)과 흑칠(黑漆) 그리고 대모를 모방한 붉은 반점이 있는 木製風簪·각제(角製)와 합성수지(合成樹脂)로 만든 것도 있다.

풍잠에는 종래의 반달 형태인 원산형풍잠 이외에도 긴 빗살이 달린 빗 풍잠, 꼬리[꼭지]가 달린 꼬리풍잠, 이동이 가능한 날개풍잠, 컷바퀴형인 이형풍잠(耳形風簪)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그림 6, 7).

대모 이형 풍잠(玳瑁耳形風簪) 두께가 0.2센티미터 미만이며 이 같은 형태의 풍잠은 재료가 대모 한 가지인 점이 특징인데, 간혹 각제(角製)도 보인다. 컷바퀴같이 생겨서 후면은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들었다. 실을 꿰는 구멍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4개의 구멍이 있는데 팔자형(八字形)과 일자형(一字形)이 있다. 대모 이형 풍잠은 담황색 투명한 대모에 대부분 갈색 점, 혹은 적색(赤色)의 점이 있으나 점이 없는 것도 있다.

원주꼭지 풍잠(圓柱尾風簪) 질이 좋은 배나무로 원산형(遠山形) 이형 풍잠에 직사각형 몸체가 붙고, 끝 부분 상부에 짧은 원주 꼭지가 튀어나왔다. 원산형인 두부(頭部)쪽에 뚫려있는 구멍 2개에 실을 꿰어 망건 살춤에 부착시킨다. 전체

를 통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다.

소뿔 메뚜기형 빗풍잠(牛角蚱形櫛風簪) 재료는 얇고 길게 통으로 잘라 만들었다. 머리 부분은 S자형으로 자연스럽게 돌돌 말았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긴 빗살로 양 옆이 약간 벌어진 형태로 머리에 꽂도록 만들었다. 즉 약식(略式) 풍잠인 것이다.

이동식 날개풍잠(紙製翼風簪) 날개형의 이동식 풍잠은 상투를 씌울 만한 크기의 소형의 관(冠)(지름 4센티미터 미만)에 대부분 부착되어 있다. 이 관을 상투 위에 씌운 후에 양쪽에 있는 사복 역할을 하는 쇠로 만든 구멍에 비녀를 꽂아 상투에 고정시키면 전후로 움직이는 날개는 90도 각도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날개 풍잠은 탕건을 고정시켜주며 날개가 하나뿐인 일익풍잠(一翼風簪)과 두 개가 있는 이익풍잠(二翼風簪)이 있다. 재료는 종이·우각·흑각·가죽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반달형 빗풍잠(遠山形櫛風簪), 연봉형 빗풍잠(蓮峯形櫛風簪) 등이 있다.

옛날 노름꾼들은 한밤에 호롱에 기름이 끊어지면 얼른 호박풍잠을 끌러 거기에다 불을 붙여 노름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호남 광대들이 곧 호사로 금패 풍잠을 써서 걸땃을 부리는 통에 세가 난 일도 있었다.<sup>15)</sup> 갓을 쓰면 보이지도 않을 부분까지 장식으로 땃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투명한 말총 탕건 속에 은은하게 비치는 황금색풍잠은 그 사람의富有格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표 6> 풍잠의 種類 및 크기<sup>16)</sup>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平底部形態	備 考
			가로	세로	높이		
1	遠山形風簪	蜜花	5.2	2.0	2.7	同形四孔八字形	雲龍紋陽刻
2	"	錦貝	5.3	1.0	2.7	同形二孔一字形	松鶴紋陽刻
3	"	白玉	3.7	1.3	2.2	同形四孔八字形	虎紋陰刻
4	"	白水晶	3.6	1.1	2.1	異形二孔一字形	
5	"	黑水晶	3.1	0.9	2.0	"	
6	"	蜜花	3.5	1.8	2.5	異形四孔八字形	
7	"	獸角	3.7	1.3	2.3	同形四孔一字形	
8	"	桐木	4.9	1.0	2.5	同形四孔八字형	赤斑紋黑漆
9	"	木	4.7	2.5	3.8	同形四孔一字형	朱漆
10	"	合成樹脂	4.0	1.9	2.2	同形四孔八字形	一名 독일밀화
11	"	琉璃	4.5	1.5	2.3	"	갈색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形態分類	備 考
			(A)		(B)			
			가로	세로	가로	세로		
12	耳形風簪	玳 瑁	5.6	3.1	2.5	1.1	赤斑紋玳瑁耳形	(B)는 후면 돌출부크기
13	"		5.7	3.7	2.3	1.4	"	
14	"		5.4	3.3	1.9	1.0	"	
15	"		4.7	2.7	2.1	1.2	"	
16	"		5.9	3.7	2.1	1.5	"	網巾에 부착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形態分類	備 考
			(A)		(B)			
			가로	세로	體長	尾長		
17	尾形風簪	木	3.0	2.6	6.3	1.1	꼭지부착형	(A)는 遠山形크기
18	"	黑角	4.5	3.0	6.5	4.1	꼬리부착형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形態分類	備 考
			가로×세로×體長			
19	翼形風簪	紙	3.3×2.8×6.0		날개부착형	左날개크기
			3.0×2.5×4.7			右날개크기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形態分類	備 考
			全長×높이		빗살(길이×數)			
20	櫛形風簪	牛角	6.4	1.9	5.2	6	메뚜기머리형 부착형	一名메뚜기풍잠
21	"	"	7.9	3.3	5.7	4	"	빗살2개 파손
22	"	"	8.8	3.7	6.0	6	"	

&lt;표 6&gt; 계속

分類 番號	名稱	材 料	크기(cm)					形態分類	備 考
			가로×세로			빗살 (長×數)	全長		
23	楸形風簪	木	4.3	3.4	5.2	4	5.3	遠山形머리빗 부착형	감나무, 빗살1개 파손
24	"	"	3.5	2.0	5.5	4	9.3	"	소나무, 赤갈색옷칠
25	"	"	4.8	3.1	6.0	4	9.7	"	오동나무
26	"	"	2.5	2.5	7.3	8	8.9	"	참죽나무
27	"	竹	3.6	3.1	8.2	5	8.7	遠山形머리빗 부착형	
28	"	木·竹	4.8	2.5	5.5	5	8.6	"	오동나무, 빗살은竹
29	"	黑 角	3.5	2.0	파손	파손	파손	"	
30	"	牛 角	5.8	3.0	5.8	5	7.5	"	이형풍잠, 빗살부착
31	"	木	2.0	2.9	5.3	4	8.3	蓮峯形머리빗 부착형	회양목
32	"	牛 角	2.8	3.5	5.5	6	9.4	"	

## 2. 貫子의 種類 및 使容例

조선시대 남자의 수식에는 망건을 중심으로 網巾飾인 貫子, 風簪 그리고 동곳[同串] 등이 있다.

조선시대 남자가 상투를 튼 머리를 잘 음집해 두기 위한 머리띠인 망건에 따르는 장식품에 하나인 貫子에 관하여 문헌고찰 및 유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자는 일명 권자(圈子), 환자(環子), 총환(總環)이라고도 하며 이용된 재료에 따라 옥관자(玉貫子), 옥환자(玉環子), 옥환(玉環), 금권자(金圈子), 금권(金圈)이라고도 했다. 망건 편자의 귀 부근에 달려서 편자 끝에 있는 좌우의 당줄을 서로 맞바꾸어 걸어 넘기는 실용적인 구실과 관품 내지는 계급을 표시하는 사회적 구실을 하였다.

成宗19년(1488)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는, “사람들은 총환을 드러내어 귀천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註)에 이르기를 “그 나라에서 머리를 싸매는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들었고 환(環)으로써 품급을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담헌서(湛軒書)』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관제(衣冠制)에 관한 필담(筆談) 가운데 “국법으로 오직 망건의 관자만으로 품급을 구분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자는 왕조 초부터 망건이 폐지되기까지 남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표징이 되었다.

“망나니짓을 하여도 금관자 서슬에 큰 기침한다.”는 속담은 그 사람의 신분과 관자를 동일시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는 1·2·3품의 당상관은 금과 옥을 사용한다고만 하고 그 구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sup>17)</sup> 그러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망건환제변증설(網巾環制辨證說)에는 “1품은 만옥권(漫玉圈), 속칭 옥환(玉環)을 하였고, 2품은 견우화양(牽牛花樣)·매화양(梅花樣)·고화양(瓜花樣)·쌍반권(雙蟠圈)의 금권(金圈: 금관자), 3품은 견우화양·매화양·잡초화양(雜彫花樣)·속호(俗號) 수팔련환자(鍔八蓮環子)의 옥권(玉圈: 옥관자)을 하었다고 되어 있다. 당하 3품 이하 사서(士庶)는 대모(玳瑁)·양각(羊角)·소 발굽(牛蹄)으로 만든 소권(小圈)을 사용하였으며, 서인(庶人) 중 호사하는 자는 琥珀이나 明珀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술한 『朝鮮賦』에서는 1품은 옥환, 2품은 금환, 3품 이하는 은환(銀環)이라고 하였으나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고 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품별(品別) 관자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 실제로 사용된 예를 들어보면, 1품은 조각 없이 질이 좋고 작은 옥관자(玳玉貫子 혹은 도리옥), 정2품은 조각 없는 소형 금관자[도리금], 중2품은 조각한 대형옥관자, 정3품은 花·竹·연양(蓮樣) 등을 조각한 대

<표 7> 문헌에 나타난 品別 貫子

품계	『五洲衍文長箋散稿』	『靑莊館全書』	『星湖僊說』
1품	漫玉圈 (俗稱 反玉環中)	玉圈	玉貫子
2품	牽牛花樣, 梅花樣, 苳花樣의 金圈(雙蟠)	金牽花樣, 梅花樣	
3품	牽牛花樣, 梅花樣, 雜雕花樣의 玉圈 (俗號 鏤八蓮環子)	玉牽牛花樣, 梅花等樣	2품 이하 金貫子, 堂上官雕玉貫子
	堂下官이하-庶人: 玳瑁, 羊角, 牛蹄의 小圈	4품이하-庶人: 玳瑁, 羊角	

형 옥관자를 사용하였다. 당하 3품 이하 서인은 뼈[骨]·뿔[角] 또는 대모(玳瑁)·마노(瑪瑙)·호박(琥珀) 등을 사용하였으며, 상인(喪人)은 소발굽을 사용하였다.

왕도 3年 喪이나 진향(進香)시에는 백종망건(白鬃網巾)에 상아권자<sup>18)</sup> 혹은 상아은혈권자(象牙隱穴圈子)를 한 예가 있으며, 내관(內官)도 상아권자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sup>19)</sup>

실제로 사용한 관자의 특징은 품계가 높을수록 금속의 크기가 작고 간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교만하고 자만심 높은 풍습을 억제하려는 작은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sup>20)</sup> 즉 『논어(論語)』 팔일편에 “禮는 사치함보다 검소함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禮에 대한 관념을 지녔던 선인들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작은 장신구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자(圈子)의 제도가 나오게 된 이야기의 전말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正祖12年(1788) 「가채신금절목(加髻申禁節目)」을 비변사에서 올린 같은 달 10월조에 경연에 참석한 신하들이 아뢰기를 “채계(髻髻)를 이미 족두리로 대체하여 부녀의 귀친에 법도가 없으니 모두 바로 잡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각각 남편의 관직을 따라 금권자·옥권자를 하되 품계에 따라 족두리 위에 붙여서 등위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시를 내리기를...”, “남자는 망건을 쓰기 때문에 망건 줄을 꿰는 데 편리하여 권자(圈子)의 제도가 나왔는데 부녀들이 본받아 현권(懸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여자는 땅의 형상을 형용하여 바야흐로 명복(命服)의 총형(蔥珩)도 고제(古制)에는 반드시 方玉을 취했는데 더구나 머리 위의 꾸밈에 있어 남자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것은 방패(方佩)의

본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니 이것이 불가함의 다섯 가지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글에서 권자(圈子) 즉 관자의 제도가 망건 줄을 꿰는데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貫子の 형태가 원형인 것은 즉 천원지방(天圓地方)으로 天은 陽이고 地는 陰이라 하는데, 남성은 陽으로 둥글게 여성은 陰으로 모나게 생긴 물체를 취해야만 한다. 관자에도 6-8능(稜)이 있지만 이것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결국 貫子도 哲理적인 형상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망건의 색이 검은 것도 黑色은 天을 상징하고 머리가 위에 있으니 天의 道를 따른 것이라 한다. 즉 조선시대 통과예(通過儀禮)에서 반드시 준거(準據)가 되었던 근본원리(根本原理)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기조로 우주(宇宙)의 운행(運行) 원리(原理)를 관자의 형태와 망건의 색에도 적용시킨 예라 할 수 있다.

1) 文獻에 나타난 貫子

(1)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貫子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貫子의 기사는 왕의 하사품(下賜品)에 관한 것이고 다음이 喪中에 관자 사용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왕의 특별한 하사품으로서 의 貫子, 작상(爵賞)의 범람 등에 보이는 관자의 실체를 표로 알아보기로 한다.

① 貫子の 사치금제

관자에 대한 금제는 조선 초기에 많이 보이는데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lt;표 8&gt; 『조선왕조실록』의 관자의 禁制

年代	禁制内容
『太祖實錄』 3년 6월 甲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직품에 따라 금·는·옥 등의 사용을 제한. 의정부(議政府)와 중추원(中樞院) 외는 명주와 비단과 玉纓子·玉環子[環子]를 쓰지 못한다.
『太祖實錄』 3년 12월 己丑	대간원(臺諫院)의 도리 옥관자(頂玉)를 금한다.
『世宗實錄』 20년 4월 甲寅	의정부에서 향리(鄕吏)와 호장(戶長)이 서대(犀帶)와 옥환의 사용을 금할 것을 아뢰다.
『世宗實錄』 24년 9월 壬午	지방 향리 등의 서대·마노갓끈·옥관자(玉環子)·옥갓끈·산호갓끈 모두 금단하고 또 향리의 산호·수정의 갓끈과 일찍이 하사받은 대모피도 금지하라고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世宗實錄』 13년 9월 己巳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부터 재추(宰樞)의 관자에는 금을 사용하지 말라.” 하다.

## ② 상례(喪禮)를 통해 본 貫子

中宗11년에는 윤지형이 國喪에 문무백관은 화려한 장식을 금해야 하므로 옥관자 착용은 개정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고,<sup>21)</sup>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에는 肅宗 승하 시 종친·문무백관 복제절목에 망건은 백연(百緣)을 두르고 금옥의 관자를 제거 한다.<sup>22)</sup>

그러나 英祖6년(1730)에 경순왕대비 승하 시에는 종친·문무백관의 喪服을 정하며 포(布)로 써 무(武)와 갓끈을 만들고 망건은 백연(白緣)을 둘렀는데, 금·옥관자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sup>23)</sup>

英祖33년 임술(壬戌)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의 상복에서 종친과 문무백관은 재취(齋纒) 기년(暮年)이니, 망건에 흰 단을 두르되 금옥관자는 없애지 않는다, 하고 英祖33년 기해(己亥)에는 지금 백관의 복은 바로 기년의 복제로서 3년의 복제와는 다른 까닭에 금옥관자를 제거하지 않

았다고 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상복제(喪服制)의 망건과 관자 착용에 대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대상(大喪)에는 종친 및 문무백관의 망건에 백연(百緣)을 두르고 금옥관자(金玉貫子)는 제거하고, 자전상(慈殿喪)에는 망건에 백연을 하되 금옥관자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sup>25)</sup>

## ③ 왕의 하사품인 貫子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관자를 하사하는 경우가 26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옥관자이고 금관자는 승지(承旨), 정승(政丞), 의병장(義兵將), 의관(醫官), 오위장(五衛將) 등에게 하사한 6건에 불과하다. 조선초기에는 야인(野人)에게 여러 가지 선물과 함께 옥관자를 갖춘 망건을 하사하고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연로(年老)하나 큰 공을 이룬 자를 뽑아 특별 하사품으로 관자를 내리고 있다. 다음 표에서 그 내용을 보기로 한다.

&lt;표 9&gt;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貫子 특별 下賜品

年代	内容
『英祖實錄』 47년 3월 壬子	왕이 승정전(崇政殿)의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식년전시(式年殿試)에 친림하여 남향노 등 74인을 뽑았다. 그 중 신수채(辛受采)는 관서(關西) 사람으로 이때 나이가 85세로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였으므로 왕이 특별히 인견하고 옥관자(玉鬪)·도포·모자 등 방방(放榜)에 응하는 물품을 만들어주도록 명하였다.
『宣祖實錄』 27년 11월 乙亥	승장(僧將) 유정(惟政)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중으로 옥관자를 붙인자가 4, 5인이나 되다] 제수하였다.
『仁祖實錄』 15년 4월 甲午	상(上)이 하교(下敎)하였다. “광해(光海)가 착용하는 입자(笠子)가 심하게 떨어졌다고 하니, 입자 및 망건과 금관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잘 만들어 보내게 하라.” 하다.

<표 9> 계속

年代	內容
『正祖實錄』 11년 2월 庚寅	“저의 할아버지 성이연(成爾演)이 올해 95세인데, 肅宗 계사년(癸巳年: 1713)에 등극하신지 40년을 축하하는 과거에서는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英祖 계사년(1773)에 등극하신지 50년을 축하하는 과거에서는 나이 81세로 합격하자 선대왕께서 방목(榜目)을 가져다 보시고 재량을 특별히 제수하였다가 다시 조사(曹司)의 위장(衛將)으로 고쳐 제수하고, 또 동지(同知)를 제수하고 금권(金圈)과 띠를 하사하셨습니다.” 하다.
『正祖實錄』 16년 2월 丁卯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한지 60년이 지난 사람들을 불러 사은하게 하다 새로 합격한 생원 윤홍각(尹弘覺)과 진사 김진광(金鎭光)은 나이가 모두 80이었는데, 자금을 뛰어넘어 첨추(僉樞)에 제수하고 호조(戶曹)에서 옥관자[玉圈]를 주라고 명하였다.
『正祖實錄』 17년 7월 乙未	장령(掌令) 강봉서(姜鳳瑞)에게 오늘 안으로 근친(親親)하기 위하여 올린 휴가 신청을 허가하여 노인의 귀밑머리에 옥관자를 다는 경사를 보게 하라 하다.
『正祖實錄』 17년 10월 甲申	김산현(金山驤)의 1백세 된 노인 여선걸(余善傑)을 소견(召見)하다. 승정대부(崇政大夫)로 특초하고 오위장(五衛將)에 단망(單望)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이어 동지중추부사를 예겸하게 하라. 또 탁지장(度支長)으로 하여금 옥관자[玉圈]를 만들어 지급하도록 하고 음식물·옷감과 잔치에 필요한 물품은 그 도로 하여금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도 내주도록 하라, 하다.

<표 10> 『조선왕조실록』의 작상 범람의 예

年代	內容
『燕山君日記』 11년 8월 己卯	대비(大妃) 등의 친족에게 모두 1자급(資級)을 더하게 하니 어리석은 자들이 당상(堂上)에 올라, 옥관자[頂玉]를 단 자가 조정에 가득하다.
『宣祖實錄』 36년 3월 乙亥	은(銀)을 캐는 북도인 들에게 역을 감해 줄 것을 호조(戶曹)와 의논 하다. 은혈(銀穴)을 보고 했다는 이유로 동반직(東班職)을 제수하며 정옥(頂玉)의 품계로 올리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니 거행하지 말라, 하다.
『光海君日記』 卽位年 10월 辛酉	양사(兩司)가 정예남(鄭禮男) 등을 개정할 것을 정하니 의관(醫官)으로서 옥관자와 금대(金帶)를 한 자가 한 둘이 아닌데 어찌 예남에게만 한 자급(資級)을 아끼려 하는가 하고 윤희하지 않다.
『顯宗實錄』 12년 11월 丁巳	장령(掌令) 윤계(尹埜)와 지평(持平) 김환(金奩) 등이 굶주려 죽은 참상은 영남이 더욱 심하였는데 옥관자[頂玉]의 상을 받은 자가 가장 많으므로 남녘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 하여 본도(本道)로 하여금 명백하게 다시 살피게 하기를 청하다.
『英祖實錄』 3년 11월 丁丑	판윤(判尹)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근년에 외서는 어의(御醫)가 모두 금관자 옥관자를 달고 혹은 품질(品秩)이 숭품(崇品)에 이르렀으며 주현(州縣)의 수령(守令)에 제수된 자가 한 때에 자그마치 3, 4인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작상(爵賞)이 너무 범람한 소치입니다.

④ 貫子の 鬚은 하사로 작상(爵賞)이 범람 대비(大妃) 등의 친족이나 어의(御醫) 들의 작상을 경계한 내용을 <표 6>에서 보기로 한다.

⑤ 貫子の 절도자(竊盜者)를 처벌 이 밖에 관자의 절도로 구금되거나 심하면 효

시(梟示)되는 일도 있었고, 옥관자가 깨졌을 경우 책임자를 율문에 따라 처벌하기도 하였다. 禁府에 갇힌 도둑 무리들과 강도 홍길동(洪吉同)이 堂上의 의장(儀章)을 갖춘 일도 있었다.

<표 11> 『조선왕조실록』의 貫子의 절도(竊盜)

年 代	
『世宗實錄』 7년 12월 乙亥	왕의 푸른옥관자[靑玉貫子]를 훔친 환자(宦子) 손생(孫生)과 시녀(侍女) 내은이(內隱伊)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英祖實錄』 5년 閏7월 庚子	포도청에 있는 죄인 김검산(金儉山)을 군문에서 효시(梟示)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청주(淸州) 역변(逆變) 때에 고(故) 병사(兵史) 이봉상(李鳳祥)의 금권(金圈)을 도둑질해간 사람인데, 장봉익(張鵬翼)이 아뢴 말에 따른 것이다
『成宗實錄』 20년 2월 丁酉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박승륜(朴承倫)이 전설사별좌(典設司別坐) 공성지(孔成之)를 율문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장막이 기울어져 쳐져서 어유소(魚有沼)의 손을 다쳤고, 변처녕(邊處寧)의 옥관자가 깨어졌으니 이는 공성지가 검거(檢擧) 하지 못한 때문이다.
『燕山君日記』 6년 12월 己酉	강도 홍길동(洪吉同)이 옥정자(頂玉)와 홍대(紅帶) 차림으로 첨지(僉知)라 자칭하며 대낮에 때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官府)에 드나들다.
『中宗實錄』 26년 1월 丙戌	금부(禁府)에 갇힌 도둑 순석(順石)의 무리를 속히 판결할 것을 청하다. 이 도둑들은 옥관자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 홍길동이 당상(堂上)의 의장(儀章)을 갖추고 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 (2) 古文獻에 보이는 貫子

고문헌에는 『한동록』, 『한양가(漢陽歌)』, 『이춘풍전(李春風傳)』 등 국문학 작품과 『조선여숙고』, 『가례도감의례』, 『궁중발기』, 『상방정례』 등에서 관자의 기사를 볼 수가 있다.

### ① 『가례도감의례』의 貫子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필요한 망건의 수요는 도감에서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1627년 소현세자(昭顯世子) 국혼 때 옥관자를 갖춘 망건 2개를 제작했는데, 옥관자를 달기 위해 관자의 색깔과 동일한 흰색 비단실 12자를 사용해서 망건에 부착하였다.

1638년에 仁祖와 장렬후(莊烈后)의 가례 때에도 왕이 사용하기 위해 2개의 옥관자를 붙인 망건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곧 이어 1671년에 거행된 肅宗과 인경후(仁敬后)의 가례와 1696년 景宗과 단의후(端懿后)의 가례 때 숙종이나 경종이 착용할 망건의 관자는 옥과 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백옥환 1쌍과 순금 1쌍씩을 만들기 위해 십품 금 7전을 들였다.<sup>26)</sup>

肅宗6年(1680)에 해창위 오태주(吳泰周)에게 출가한 顯宗 3녀의 『명안공주가례등록(明安公主家禮謄錄)』에서 公主儀賓의 옥관자 갖춘 망건 각 1개와 친씨(親氏) 여섯분의 석관자(錫貫子)를 갖춘 망건 각 1개씩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7)</sup>

또한 『상방정례』에는 왕세자 및 왕세손의 관례 시 白玉環子 2쌍의<sup>28)</sup> 기록이 있고 공·옹주 가례 시 의빈의복에 金圈자가 갖추어진 망건이<sup>29)</sup>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英祖20年(1744)년 외연의 묘야에 참가한 舞童 10명의 망건 10부에 매부마다 簪纓子(簪纓子) 2개씩을 갖추었다고 되어 있다.

### ② 『궁중발기』의 貫子

『궁중발기』에는 純宗의 임오(壬午:1882) 관례·가례 시 쓰인 관자로 산호(珊瑚), 비취(翡翠), 순금(純金), 옥(玉)으로 만들어진 관자의 기록이 있고, 역시 임오가례에 쓰인 『임오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누라빈허노리개불기』에는 연화, 매화, 초롱[초롱] 형태의 관자<sup>30)</sup>가 보인다.

### ③ 국문학 작품 가운데 나타나는 貫子

『옥중화(獄中花)』에 보이는 신연(新延), 급창(及唱)<sup>31)</sup>의 호사스런 머리치장으로 “외울망건 대모관자”와 『한양가(漢陽歌)』 전승놀이조에서 별감(別監)의 머리치레로 “곱게 뜯 평양망건 외점박이 대모관자”가 보인다.

군현(郡縣)의 급창이나 서울 별감의 관자가 모두 대모관자(玳瑁貫子)인 것은 관자가 관품(官品)의 표시물이므로 다른 머리 장식품과는 달리 당하관(堂下官)부터 서인(庶人)들이 사용하는 대모관자를 사용 하고 그 이상의 관자 치레

는 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이춘풍전(李春風傳)』에서 보면, “외올 망건 대모관자 당줄 줄라 질끈 쓰고 게알 같은 제주당건, 삼백 싹 돌입 계양 태 제모입에 엇 돈 오피 짜리 은구영자(銀鉤纓子), 산호격자(珊瑚格子) 두 귀 밑에 달아 놓고…라 하여 대모관자(玳瑁貫子)가 다시 보인다.

### 3. 遺物을 통해 본 貫子

#### 1) 貫子의 문양

조선시대 관자는 조선조의 一般 공예품(工藝品)과는 달리 직경이 3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공간이며, 圓形이라는 주어진 구도에 맞추어 문양도 대칭(對稱)이거나 圓을 따라 굽은 형태가 많이 있다.

관자에 시문(施紋)된 문양 중 식물문양에는 조선시대 士大夫들이 즐겨 사용한 사군자류(四君子類)가 많은데 대나무잎[竹葉]·나팔꽃[牽牛花]·梅花·蓮花·외꽃[瓜花]·菊花·수초[藻] 기타 잡조화(雜雕花) 등이 있다. 죽엽의 수는 삼竹葉에서 五竹葉까지 있는데 삼 죽엽이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물문양에는 鶴·편복(蝙蝠)·반리문(蟠虺紋)이 보이며, 칠성(七星)·日月·삼태성(三台星)이 시문된 특이한 성좌문(星座紋) 貫子도 있다.

문헌에 보이는 쌍반(雙蟠)·쌍리(雙虺)는 2품이 사용하는 금관자에 시문되어 있는데, 『박고도(博古圖)』<sup>32)</sup>에 “이(虺: 교룡)는 탁수(濁水)에 서식하며 청수(淸水)에 노닐면서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한다. 인충(鱗蟲: 몸에 비늘이 있는 동물)에 영(靈)이 있는 것으로 지상의 농산물을 윤택하게 하는 뜻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용(龍)의 속성인 물[水]과 하늘[天]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천재이변(天災異變)에 예민했던 농경 사회에서 비를 오게 하는 영력(靈力)을 가진 龍과 천자(天子)가 관련을 갖는 것처럼 조신(朝臣)과 리(虺)가 연관되어 관자에 문양화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8> 옥관자,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9> 금관자,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 2) 貫子의 크기와 基本形

관자의 크기는 옥석관자는 지름이 1(錦貝貫子)~3센티미터(玉·琉璃貫子)이고, 금속관자는 지름이 0.9(금관자)~2.5센티미터(金貫子)이다. 관자의 두께는 0.1센티미터의 玳瑁小圈부터 0.8센티미터의 白玉貫子까지 다양하다.

관자의 기본형은 원형(圓形)으로 전면인 장식부(裝飾部)와 실을 꿰어 망건에 부착시킬 수 있는 구멍 두 개와 고리 쇠가 있는 후면부(後面部)로 구분된다. 후면부는 망건의 ‘선단’에 부착시키게 되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된다. 또한 자마노(紫瑪瑙)·우골(牛骨)·백옥(白玉) 가운데는 기본형의 장식부나 후면부가 없이 동일한 형태 있다.

금관자는 순금 관자도 극히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동(銅)에 도금을 한 것이다. 도금 기술이 뛰어나 순금처럼 보이며 도금이 쉽게 벗겨지지도 않는다. 순금 관자는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과 일본문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쌍반권(雙蟠圈)이 돌을문으로 새겨져 있다.

『유원총보(類苑叢寶)』<sup>34)</sup>에 동(銅)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음이 사군지행(士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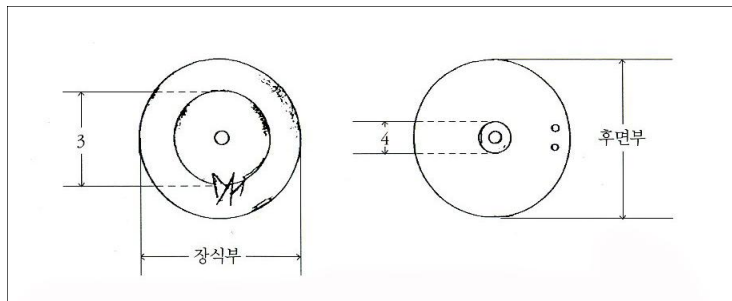
<표 12>貫子の種類 및 크기<sup>33)</sup>

分類 番號	名稱	材料分類	크기(cm)			形態分類	備考
			지름	中心 지름	두께		
1	翡翠貫子	翡翠	1.5 1.6	0.15 0.1	0.2 0.2	基本形	
2	錦貝貫子	錦貝	1.0	0.5	0.2	前後同形	
3	瑪瑙貫子	瑪瑙	1.8 1.7	0.7 0.6	0.5 0.5	"	淡紅色
4	紅石貫子	紅石	1.8	0.2	0.4	複合形	
5	艾石貫子	艾石	2.2	0.15	0.5	"	
6	水瑪瑙貫子	水瑪瑙	2.5	0.6	0.6	基本形	
7	玳瑁貫子	玳瑁	1.1	0.4	0.15	前後同形	
8	"	"	1.1	0.4	0.1	"	赤色斑點
9	角貫子	獸角	1.5	0.2	0.2	基本形	竹四葉紋
10	玳瑁貫子	玳瑁	1.9	1.2	0.25	前後同形	
11	角貫子	獸角	2.2	1.2	0.4	"	
12	象牙貫子	象牙	1.8	0.7	0.4	"	
13	骨貫子	骨	2.3	1.0	0.4	"	
14	琉璃貫子	琉璃	1.8	0.2	0.3	基本形	七瓣花
15	"	"	2.0	0.15	0.6	"	
16	"	"	2.5	0.7	0.3	"	藻紋
17	"	"	2.8	0.2	0.8	"	三圓紋(三台星)
18	"	"	3.0	0.25	0.4	"	竹五葉紋
19	鍍金貫子	銅鍍金	2.0	0.4	0.4	變形基本形	외꽃
20	"	"	2.5	0.6	0.3	"	牽牛花
21	"	"	2.5	0.7	0.2	基本形	梨花
22	"	"	1.5	0.6	0.1	"	梅花
23	"	"	1.6	0.5	0.2	"	"
24	"	"	1.2			變形基本形	"
25	"	"	2.5	0.7		基本形	菊花
26	"	"	1.7	0.2	0.15	"	蓮峯紋
27	"	"	2.3	0.3	0.15	"	蓮花紋
28	"	"	1.7	0.6	0.1	"	雙蝙蝠紋
29	"	"	1.8	0.6	0.2	"	7모
30	"	"	2.0	0.4	0.2	"	6모
31	"	"	2.0	0.4	0.1	"	鶴紋
32	"	"	3.0	0.6	0.15	"	日月斗星紋
33	"	"	1.2	0.3	0.3	"	單螭紋



<표 12> 계속

分類 番號	名稱	材料分類	크기(cm)			形態分類	備考
			지름	中心 지름	두께		
34	"	"	1.3	0.3	0.3	"	雙螭紋
35	黃銅貫子	黃銅	2.4	0.7	0.5	基本形	
36	"	"	1.8	0.6	0.3	"	螭紋
37	白玉貫子	白玉	1.0	0.4	0.3	前後同形	
38	"	"	1.3	0.4	0.4	"	당줄부착
39	"	"	1.3	0.2	0.3	基本形	三竹葉
40	"	"	2.0	0.2	0.5	"	"
41	"	"	2.0	0.2	0.4	"	蝙蝠紋
42	"	"	2.7	0.15	0.5	複合形	"
43	"	"	2.1	0.4	0.3	基本形	7 모
44	"	"	1.9	0.5	0.3	"	梅花
45	"	"	2.4		0.3	"	외 꽃
46	"	"	3.0	0.6	0.3	"	



<그림 10> 관자의 기본형

기본형은 원형으로 전면인 장식부와 실을 꿰어 선단에 부착 시킬 수 있는 구멍 두 개가 있는 후면부로 구분이 된다. 3, 4는 장식부의 내원(內圓)이다.

之行)과 같다고 했고, 옥은 군자의 덕(德)과 비교될만한 덕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당상관(堂上官)의 금옥관자(金玉貫子)에 銅과 玉을 주요 재료로 사용함도 이와 같은 조선 초기에 산견(散見)되는 관자에 대한 금제(禁制)로 미루어보아 고려 말에 망건과 관자가 착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남자가 상투를 튼 머리를 잘 음첩해 두기 위한 머리띠인 망건과 그에 따르는 망건식(網巾飾)으로 관자, 풍잠에 대하여 사적 고찰 및 현전 유물을 살펴보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기혼남자의 계양(髻樣)은 크게 雙髻[쌍상투]와 豎髻[외상투]로 나뉜다.

쌍계는 보통 관례전(冠禮前)의 남아(男兒)나 장년(壯年), 노년(老年)이라도 정발(頂髮)이 많은 사람이 했으며 수계는 조선조 성인남자의 가장 일반적인 수발(修髮)형태이다.

이 같은 상투를 튼 머리에 쓴 망건은 그 기원을 중국 당대(唐代)로 소급해서 “투액라망건(透額羅網巾)”을 시원형(始原形)으로 보고, 또한 머리를 꾸미기 위해 썼던 “繼(리·사) [一名 繼(쇄)]”가 망건의 전신(前身)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상하 귀천 없이 통용되기는 명(明) 태조(太祖)부터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조선조에 들어와 성행되었으며 관례(冠禮)를 통하여 성인(成人)으로서 비로소 망건착용이 가능하였다.

조선조 망건은 보통 마미(馬尾)로 만들되 “얇”만은 인발(人髮) 또는 낙타미(駱駝尾)로 만들기도 했다고 하며 선단과 설주는 흑색공단으로 하였으며, 대상(大祥)·담제(禫祭)<sup>35)</sup> 시(時)에는 흑백(黑白)이 섞인 말총망건에 백면포(白綿布)로 선단을 하였다.

正祖는 습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강을 설명하면서 망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마치 망건에 위를 빨 끈이 있는 것과 같아 윗부분에 팽팽하게 묶을 곳이 있어야지만 아래가 꼭 퍼지는 것이다.”<sup>36)</sup>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망건이 염발도구(斂髮道具)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망건식(網巾飾)의 하나인 풍잠(風簪)은 흑립(黑笠)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장식물로,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서 망건에 부착된 풍잠을 볼 수가 있다.

유물(遺物) 풍잠(風簪)은 구조특징(構造特徵)에 의하여 8種類로 대별(大別)하고 각각의 형태와 기능을 고찰한바, 종래의 반달 형태인 원산형풍잠(遠山形風簪) 이외에도 긴 빗살이 달린 빗풍잠, 꼬리[꼭지]가 달린 꼬리풍잠, 移動이 가능한 날개풍잠, 이형풍잠(耳形風簪)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풍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의 풍잠들은 基本形인 원산형풍잠의 단점을 보완하여 후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고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본형인 원산형풍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장식부(裝飾部)인 전후(前後)가 동형(同形)이

며 평저부(平底部)가 사공팔자형(四孔八字形)이었으며,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수정(水晶)을 비롯해서 옥(玉), 대모(玳瑁), 호박(琥珀), 각(角), 목(木), 유리(琉璃), 합성수지(合成樹脂) 등으로 만들었다.

특히 나무풍잠은 대부분이 오동나무[梧桐木]에 옷칠을 한 것으로, 이는 가볍고 습도조절과 통풍이 가능한 오동목의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풍잠의 문양으로는 장식부(裝飾部)인 전후를 돌려가며 운룡문(雲龍紋)을 양각(陽刻)한 것과 전면에만 송학(松鶴)과 호문(虎紋)을 쉐한 것이 있었다.

貫子は 일명 권자(圈子), 환자(環子)라고 하는데, 망건당줄을 걸어 넘기는 소임을 하는 한편 그 재료와 새김에 따라 品級을 구분하는 사회적인 역할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圈子의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남자는 망건을 쓰기 때문에 망건 줄을 꿰는데 편리하여 권자의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貫子の 형태가 원형(圓形)인 것은 남자는 하늘에 해당함으로써 천원지방(天圓地方)인 철리(哲理)의 형상을 따른 것이며 또한 망건의 색이 검은 것도 검은 하늘을 상징하고 머리가 위에 있으니 天의 道를 따른 것이라 한다. 즉 조선시대 통과례(通過儀禮)에서 반드시 준거(準據)가 되었던 근본원리(根本原理)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기조로 우주(宇宙)의 운행원리(運行原理)를 관자의 형태와 망건의 색에도 적용시킨 예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자의 使容 例를 후세에 보면 조선조 법전(法典)에 명시되어진 것처럼 당상관(堂上官)은 금옥관자(金玉貫子)를 사용하고 있지만, 金玉을 통해서 품위(品位)가 높아갈수록 작고 간소한 것을 보는데 이는 교항(驕亢)의 기습(氣習)을 억제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즉,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編)]에 “禮는 사치함보다 검소함이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禮에 대한 관념을 지녔던 先人들의 정신세계에 일면을 작은 장신구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궁중관례(宮中冠禮)·가례(嘉禮)에 착용된 관자에서는 연화(蓮花), 매화(梅花)의 옥관자(玉貫子)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같은 관례(慣例)가 궁중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왕조초기 실록(實錄)에서 산견(散見)되는 옥환자(玉環子)에 대한 금제(禁制)를 미루어 볼 때에 高麗 末에 이미 망건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으며, 또한 貫子에 사용에도 흉배제도와 같이 文武의 區分이 있었던 것을 문학작품 [한등록]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유물을 통해 본 관자는 조선조에 일반 생활 공예품(工藝品)과는 달리, 직경이 3cm미만이라는 작은 공간에 원형(圓形)이라는 주어진 구도(構圖)에 맞추어 문양도 대칭적(對稱的)이거나 원(圓)을 따라 굽은 형태가 많이 있다.

관자에 시문(施紋)된 문양은 식물문에는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들이 즐겨 사용한 사군자류(四君子類)이며 동물문에도 학(鶴), 편복(蝙蝠), 반리문(蟠虯紋)이 보인다.

문헌에 보이는 쌍번(雙蟠), 쌍리(雙虯)는 이품(二品)에 사용하는 금관자에 시문되어 있는데, 『박고도(博古圖)』에 “리(虯)는 탁수(濁水)에 서 식하며 청수(淸水)에 노닐면서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한다. 인충(鱗蟲)에 영(靈)이 있는 것으로 지상에 농산물을 윤택하게 하는 뜻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볼 때에 용(龍)의 속성인 수(水)와 천(天)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천재이변(天災異變)에 예민했던 농경사회에서 비를 오게 하는 영력(靈力)을 가진 龍과 天子가 관련을 갖는 것처럼, 조신(朝臣)과 리(虯)가 연관되어 금관자에 문양 화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관자(貫子)에 시문된 “虯”는 龍頭에 동체와 발이 달린 것과, 中國 周代 「고옥반리사규유저(古玉蟠虯四圭有邸)」에 각식(刻飾)된 蟠虯紋이나, 「반운일규유저(蟠雲一圭有邸)」에 蟠雲과 유사한 형이 보인다.

즉 반리형(蟠虯形)과 권운형(卷雲形)으로 대별 할 수가 있는데 그 형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관자에 시문된 문양 가운데 虯, 일월성신(日月星辰), 청결을 상징하는 수초(水草)인 조문(藻文)은 중국상대(中國上代)에 천지사방(天地四方)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옥규(玉圭)에 각식된 문양과 상징하는 바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유원총보(類苑叢寶)』에 “동(銅)은 온도와 습

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음이 사군자지행(士君子之行)과 같다.”고 했고, 옥(玉)은 군자(君子)의 덕(德)과 비교될 만한 德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당상관의 금옥관자(金玉貫子)에 銅과 玉을 주재료(主材料)로 사용함도 이와 같은 뜻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金鐘太 (1981). 「網巾匠」 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第140號, 文化財管理局.
- 2) 李緯 著, 이수영 편역 (1992). *국역 사례편람*.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p.271.
- 3) 張慶嬉 (2004). *朝鮮時代 冠帽工藝史 研究*. 서울: 景仁文化史, p.18.
- 4) 光海君日記 卷26, 2年 3月 丁丑條.
- 5) 張慶嬉 (2004). op. cit., p.60.
- 6) 李晔光 著, 南晚星 譯 (1978). *芝峰類社* 서울: 乙酉文化史, p.410.
- 7) 八木榮三郎 (1901). *韓人間에 使容되는 冠에 種類* 東京: 東京人類學會雜誌 第十六卷, 第百八十一號.
- 8) 채옥자, 유효선 (2009). 이익정 묘 출토 망건의 소재 및 구성법에 관한 연구. *服飾* 第59號 p.16.
- 9) 李德懋 著, 金東주 等譯 (1977).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一 士典一 服飾.
- 10) 徐有矩 (1967). *林園十六誌*. 서울대학교 古典叢書 第五輯, p.527.
- 11)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품.
- 12) 成宗實錄 6年(1475) 7월 甲子條. 高宗實錄 23年(1886) 2월11 乙亥條.
- 13) 金鍾태 (1990). *韓國手工藝美術*. 서울: 藝耕, pp.444-446.
- 14) 沈載完·李殷昌 (1972). *韓國의 冠帽*.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p.60.
- 15) 芮庸海 (1963). *人間文化財*. 서울: 語文閣, p.430.
- 16)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품
- 17) 『經國大典』 (1962) (上卷) 禮典 儀章條, pp.217-218. 法制處.

- 18) 『燕山君日記』 1년(1495) 1월26일 庚戌條.
- 19) 『燕山君日記』 12년(1506) 4월18일 丁卯條.
- 20)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風俗編, 서울: 東明社, p.112.
- 21) 『中宗實錄』 11년(1516) 2月14日 乙丑條.
- 22) 『景宗修正實錄』 景宗即位年(1720) 6月8日 癸卯條.
- 23) 『英祖實錄』 6년(1730) 7月4日 辛未條.
- 24) 『英祖實錄』 33年(1757) 4月1日 壬戌條.
- 25) 張淑煥 (2003). 전통남자장신구. 서울: 대원사, p.63.
- 26) 張慶姬 (2004). Op. cit., p.65.
- 27) 張淑煥 (2003). Op. cit., pp.60-62.
- 28) 『尙房定例』 別例 下 十四
- 29) 『尙房定例』 別例 下 六十二
- 30) 張淑煥 (2003). Op. cit., p.62.
- 31) 군아에 달려 원의 명령을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령.
- 32) 中國 宋代의 왕보가 편찬한 고기도록(古器圖錄). 『선화박고도록(宣和博古圖錄)』이라고도 한다. 1123년(宣和 5)경에 완성.
- 33)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품
- 34) 仁祖때의 문신·학자 金堉(1580-1658) 이 1643년에 엮은 類書.
- 35) 大祥은 사람이 죽은 뒤에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大碁·祥事]. 禪祭는 大祥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禪祀].
- 36) 『正祖實錄』 24年(1800) 3月5日 丁巳條.